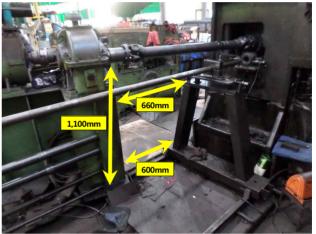
금속 교정기 외전축에 옷이 말림

재 해 개 요

'15. 1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 금속 가공 작업장의 인발라인에서 피재자가 교정기 회전축 하부로 머리를 숙여 이동하던 중 회전축에 작업복이 말려들어가 사망한 재해임

재해상황도





기인물(교정기 회전축)

재해발생장소

재해발생상황

○ 피재자가 교정기 후면에 설치된 드릴기에서 가공작업을 한 후 교정기 회전축 하부로 머리를 숙여 통과하던 중 회전축에 옷이 말리면서 재해가 발생함

※기인물(교정기 회전축)

- 구성 : 회전축(Ø82×1,300mm), 유니버설조인트, 플랜지, 제작사 : SCH○○○○
- 제작년도 : 1970년, 회전속도 : 시계방향 2,000∼2,400rpm
- 교정기 회전축은 유니버설조인트와 플랜지(나사로 연결)로 연결되어 있으며, 방호덮개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
- 회전축은 바닥에서 1,200mm 높이에 있으며, 폭 600 ~ 660mm의 통행이 가능한 공간이 있음
- 피재자의 복장은 모자를 쓰고 회사에서 제공한 겨울점퍼 위에 등산용 조끼를 착용한 상태였음

재해발생 원인

○ 회전축 연결부(유니버설조인트)에 접근할 경우 유니버설조인트 또는 돌출된 나사 등으로 인하여 감기거나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었으나 작업자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음

동종재해 예방대책

- 회전축에 신체의 일부 또는 작업복이 접촉하여 말려들어갈 위험이 있는 부위에는 덮개·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,
- 회전축에 부속되는 키·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설치해야 함

관련 법규
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(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)
 - ①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·회전축·기어·풀리·플라이휠·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·울·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② 사업주는 회전축·기어·풀리 및 플라이휠 등에 부속되는 키·핀 등의 기계요소는 묻힘형으로 하거나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.